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관련 문의내용 모음

■ 일반적인 사항

Q 특화 분야의 지원 규모 및 내역은 일반 분야와 상이한가요?

A 지원규모는 상이(일반 1,100명, 특화 600명)하지만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3. 지원내용 및 기간
○ 사업화자금(바우처*)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Q 주관기관 선택 시 집 또는 사무실 근처 대학이나 센터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A 일반분야의 경우, 근처 대학 또는 센터로 주관기관 선택이 가능하지만 특화분야의 경우, 본인의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Q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신청자도 특화분야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분야에 신청하신 예비창업자 분도 신청은 가능하시나, 일반분야에 최종 선정 되시면 특화분야 평가대상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없는 분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3년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창업을 하지 않아 활동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 되어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이종업종으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단, 현재 기창업자로서 공고일 이후 폐업을 하셨을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Q 따로 운영 중인 사업체는 없으나 소액 임대사업자(6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는 공고일(20.3.17) 기준으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셔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공고일 이후 임대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특화 분야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3.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Q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희망(소외자)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원 자격에 미달되나요?

A 대출상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2.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Q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으로 신청하여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협약기간이 중복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점에 관련한 사항

Q 가점 항목 중 '특허권 권리권자에 한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본인이 해당 특허권의 소유권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실시권 불가)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가점항목
<신성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Q 회사 소속으로 발명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가점항목에 해당될까요?

A 개발은 했으나 권리권이 없을 경우 가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특허가 회사명으로 되어있으면 가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채용 예정 중인 팀원이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창업 한 이력이 있고, 현재 그 사업체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팀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A 팀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2019년 사업 수혜이력이 있으면 2020년 예비 창업패키지 직원으로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Q 팀원이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팀 창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4대보험 가입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참고 3] 팀창업 기준
 팀창업 조건 :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
○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되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
○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
○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고용 유지

Q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팀원으로만 고용해야 하나요?

A 팀창업은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팀원이 변경될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분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가족구성원을 팀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A 팀원으로 가족을 넣는 것은 가능하나, 인건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팀창업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4대 보험 전체 가입이 안되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자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통합관리지침 제44조(인건비)
	<p>제44조(인건비) ①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협약체결일 이후에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창업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기존 직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각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p> <p>⑥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p>

Q 팀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A 팀원 수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달라지지 않으며 팀창업 가점만 부여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p>6.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지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 사업신청에 관련한 사항

Q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A 사진, 그래프, 표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

Q 사업계획서 안내사항에 본문 5페이지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까지 작성이 가능한가요?

A 분량에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현황 및 창업아이템 개요를 제외하고 본문 5페이지 내외 작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페이지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되도록 본문 5페이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글자 폰트와 크기가 정해져있나요?

A 글자와 폰트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사업계획서(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 제외)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Q 사업계획서 2페이지에 제품 미완의 경우 꼭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진은 몇 장까지 첨부할 수 있는 건가요?

A 미완의 경우 설계도나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으로 첨부해주시고, 사진 첨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본문 5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Q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없이 그대로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사업계획서(양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fit-content;"> <p>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p> <p><small>※ 본문 5페이지 내외(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small></p> </div>

Q 과제명은 사업아이템을 기입하면 되나요?

A 과제명은 창업아이템의 내용(예 : 00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00개발...)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기술 영역에서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근접한 분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비창업패키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fit-content;"> <p>▶ 과제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과제명</td> <td>test</td> </tr> <tr> <td>과제내용</td> <td>test</td> </tr> <tr> <td>지원분야</td> <td>지식서비스</td> </tr> <tr> <td>창업희망지역</td> <td>경기</td> </tr> <tr> <td>전문기술분야</td> <td>정보·통신(정보·통신) SW</td> </tr> <tr> <td>주관기관</td> <td></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과제내용 : 본인 아이템·아이디어명 및 간략한 내용 기입 ◆ 지원분야 : '지식서비스', '제조' 중 선택 ◆ 창업희망지역·전문기술분야 : 창업희망지역 및 전문기술 분야 선택 ◆ 주관기관 : 신청 주관기관 확인 	과제명	test	과제내용	test	지원분야	지식서비스	창업희망지역	경기	전문기술분야	정보·통신(정보·통신) SW	주관기관
과제명	test											
과제내용	test											
지원분야	지식서비스											
창업희망지역	경기											
전문기술분야	정보·통신(정보·통신) SW											
주관기관												

Q 온라인 신청 시 1인 창업인 경우에 Step1 직원 현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팀원이 없으실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 팀원이 있는 경우 항목 값 입력 후, '저장하기-다음단계' 클릭
- ◆ 팀원이 없는 경우 입력 불필요 (공란), '저장하기-다음단계' 클릭

Q 현재 해외 기업의 국내 영업을 대리하고 있으며, 세금문제로 소속은 대사관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업은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직업의 경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현재직업 *	---선택---
현재직위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창업경험 *	중견기업
자택지역 *	대기업
주소(자택)	공공(연구)기관
	중·중고 학교
	대학/대학교
	정부·지자체
	일반합회·단체
	프리랜서
	학생
	전업주부
	무직·퇴직 등 기타

Q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는 아래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한 개의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기에 가점 증빙서류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한글파일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 ◆ 파일첨부하기 클릭 후 '사업계획서' 파일 원본(한글파일) 첨부하여 전송하기

Q 예비창업패키지 서류 제출 시 실수로 신분증 사본을 누락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접수 마감일 전에는 제출한 서류를 삭제 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붙임 파일의 신청 매뉴얼에 해당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내용 변경방법(신청내용 삭제방법)

- 사업신청·관리 상단의 '사업신청' - 하단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 클릭 → 재신청

■ 사업비 집행에 관련한 사항

Q 전 직장 동료를 추후에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퇴사하신 상태라면 전 직장 동료를 추후 고용 및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Q 팀원 모두 현재 타 회사에 근무 중이며, 창업 이후에도 타 회사 근무(4대보험 적용)하며 동시에 적용할 예정인데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팀원분들의 '고용'보험이 창업기업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Q 팀원은 월급을 주고, 공동대표자는 월급을 줄 수 없는 것인가요?

A 팀원은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공동대표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팀원 인건비 산정 시 최저임금 기준인 1,795,310원(2020년 세전 월급여) 보다 낮게 임금을 산정해도 되나요?

A 법정 최저임금 미 준수 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통합관리지침 제44조(인건비)
제44조(인건비)

:

- ④ 사업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⑤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진행중인데 인력을 채용하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4대보험료를 지원받아도 되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를 수행하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예비창업 패키지 인건비와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혜받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인화된 금액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혜받았을 경우 4대보험 고지서가 인화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 4대보험 산출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산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Q SW쪽으로 지원하려는데 일부 개발을 풀타임이 아닌 프리랜서로 단기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신다면 단기고용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 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 </td> </tr> </table>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 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 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 		

Q 마지막 달 인건비 청구 시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력 형식이 여러 가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의 경우 다른 지원사업의 중복수혜를 확인하고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건강, 연금 등 각각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5]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td> </tr> </table>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Q 협약이 종료되는 달에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인건비는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약 협약 전 채용한 인력이라면 협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td> </tr> </table>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Q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은 지난 인건비에 대해 집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A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보험 가입일 이후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Q 외주용역비를 꼭 일시납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분할 지급시 선급금보증보험을 꼭 내야 하나요?

A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합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외주용역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td> </tr> </table>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Q 외주용역비를 직접 해당 기술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A 개인-개인, 기업-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하며, 기업-기업 간의 거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사업장 임대료는 협약기간 동안 월세가 지원되는 건가요?

A 협약기간 내에만 임차료 집행이 가능하며, 보증금에 대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지급수수료</td> <td> ※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td> </tr> </table>	지급수수료	※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지급수수료	※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Q 차량 통신 평가용 장비와 같이 금액이 큰 항목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상대적으로 큰 금액 집행 시 주관기관 승인 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 6]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참고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f4a460;">구매품목(합계) 300만원 초과 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승인 요청서[별지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행위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td> </tr> </table>	구매품목(합계) 300만원 초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승인 요청서[별지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행위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구매품목(합계) 300만원 초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승인 요청서[별지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행위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Q 대용량 외장하드 등의 저장매체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의 경우, 창업활동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의무에 관련한 사항

Q 협약기간 중에 대표자나 팀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1년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과 사업비 잔액이 환수됩니다. 팀원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존 팀원 경력에 준하는 팀원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Q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을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협약종료일까지 역량강화교육 및 심화교육 미수료자는 지침 및 기준 위반으로 제재 조치 및 불이익(최종점검 시 성과평가 결과 '실패판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세부관리기준 제5장(창업기업 교육) 제27조(교육 수료) ① 선정된 창업자는 협약완료 후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교육수료(40시간) 여부를 지속·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법인 전환 시,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나요?

A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모두 법인사업자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관리지침 제64조(권리 의무 이전) 제64조(권리 의무 이전) ①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Q 협약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업체를 잠시 휴업해도 되나요?

A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폐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이 조치됩니다.

참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